

# 재단법인 朝鮮佛敎中央敎務院의 자산 운영과 한계

김성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 I. 머리말
- II. 교무원의 설립과 자산 구조
- III. 재정 운영과 학교 경영
- IV. 교무원 체제의 의미와 한계
- V. 맺음말

## 요약문

이 글은 192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교무원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근대'의 제도적인 변혁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개혁 성향의 總務院과 보수 성향의 教務院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불교계는 1924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통합되어 중앙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무원의 기본 자산은 각 본산으로부터 기부행위로 들어온 토지나 현금 등의 1종재산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인 2종재산으로 이루어졌다. 교무원은 2종재산으로 현안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원활한 재산 확보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2종재산은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하였고, 교무원은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借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적자재정 속에서도 교무원이 주력했던 사업은 바로 학교의 경영이었다. 불교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력을 양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교육사업이 중요했던 만큼 교무원이 경영한 普成高等普通學校와 佛教專修學校에 투입된 비용은 교무원

의 1년 예산에서 1/2~2/3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였다. 그러나 천도교로부터 인수받아 경영한 보성고보는 敎員과 학생 대다수가 非佛敎人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교계 인재를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불교전수학교는 전문학교로의 승격 문제로 재정압박이 심해져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재단법인 교무원은 분명히 이전에 존재했던 불교계 기관과는 차별화 된다. 재단법인이라는 法制上的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처음으로 전국 각 本山으로부터 기본 재산을 거두어들여 주요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변화였다. 더욱이 제도적으로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신식학교를 경영하여 불교 인재를 배출하였던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재단법인 교무원은 敎界 운영상의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재단법인, 1종재산, 2종재산, 교무원, 보성고등보통학교, 불교전수학교, 종회(宗會)

## I. 머리말

조선 시대를 거치며 오랜 시간 동안 비제도권에서 門派를 중심으로 활동한 불교계는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종단 건설의 노력과 근대 학교의 건립을 시도하며 도심 속으로 진출하여 근대화, 대중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대다수 승려들은 1911년에 반포된 ‘寺刹令’<sup>1)</sup>과 ‘寺刹令施行規則’<sup>2)</sup>에 의한 30본산 체제의 수용을 조선 불교의 발전이라고 인식하였다.<sup>3)</sup> 그러나 사찰령 체제하에서 30본산의 주지와 말사의 주지들은 각각 조선총독과 해당 지방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 사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는 사찰령의 마지막 조항은 조선 불교계가 무엇 하나 사찰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1) 《朝鮮總督府官報》 制令 제7호, 1911. 6. 3

2) 《朝鮮總督府官報》 府令 제84호, 1911. 7. 8

3) 한 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5, p. 70

을 대변해준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철저히 못했던 현실 인식과 조선 시대 내내 통일 종단 없이 비제도권에서 머물렀던 가슴 아픈 역사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찰령에 대한 이러한 불교계의 인식은 3·1운동 이후 젊은 승려 계층을 중심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朝鮮佛教青年會와 朝鮮佛教維新會는 일제에 협조적이었던 30本山聯合事務所에 맞서 조선불교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20년대 초반은 불교계가 개혁 성향의 ‘總務院’과 주지를 중심으로 한 보수성향의 ‘教務院’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거듭하면서 무력으로 서로 치고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던 혼란한 시기였다.<sup>4)</sup> 그러던 중 1922년에 교무원에서 먼저 재단법인을 신청하여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1924년에는 총무원이 여기에 흡수 통합되어 불교계의 단일 기구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비록 개혁 성향의 총무원이 좌초된 형상이었지만,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제정 구조를 확립하고 중앙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하 ‘교무원’)의 설립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 교무원은 1920~30년대 불교계의 중앙 사업을 주관하였다.

재단법인 교무원의 주된 사업은 학교 경영이었다. 근대 불교계는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수용되는 현실 속에서 불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화에 힘써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통해 젊

4) 「사무실 문제로 불교계 또 분쟁」, 《동아일보》 1923. 2. 20 ; 「사무실 쟁탈로 격투」, 《동아일보》 1923. 2. 25 ; 「폭력화한 佛教戰」, 《동아일보》 1923. 2. 26 ; 「폭력에서 법정으로 쌍방이 서로 대항 불교계의 대분쟁」, 《동아일보》 1923. 3. 1 ; 「스님 上座의 亂鬪」, 《동아일보》 1923. 5. 29 등.

고 유능한 포교사를 양성해야만 했다.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정관 제1조에서도 “本法人은 朝鮮佛敎의 發展을 圖기 爲하며 宗教 並히 敎育의 事業을 爲하여 朝鮮寺刹本末寺의 聯絡을 圖함으로써 目的함”<sup>5)</sup>이라고 명시하여 교육 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무원이 법인으로 교육 사업을 위해 전국 각 사찰의 연락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통해 각 본산으로부터 학교 경영을 위한 자산을 확보하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교무원에 대한 연구는 설립배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6)</sup>와 普成高等普通學校(이하 ‘보성고보’)·佛敎專修學校(이하 ‘불전’)를 경영하며 겪었던 재정난에 초점을 둔 연구,<sup>7)</sup> 그리고 교무원의 조직구성 및 出資와 본산 부담금에 대해서 다룬 연구<sup>8)</sup>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재단법인 교무원이 성립되는 1920년대 초반의 불교계 동향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거나 교무원 자체보다는 학교의 운영에 큰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또 재단의 출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재단법인이 성립되는 초기의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무원이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1920년대 불교계 대부분의 사업을 총괄했던 중심 기관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

5) 「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務院寄附行爲定款」,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67, 민족사, 1996, p. 128

6) 김 순석,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성립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김 광식, 「교단 개혁운동의 명암」,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7) 김 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에 재수록됨. 본문에서 이 논문에 대한 인용은 민족사본을 참고하였음)

8) 한 동민, 앞의 논문, 2005, pp. 173—199

지 교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단법인 교무원의 1년 예/결산안을 분석하여 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20~30년대 불교계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초로 ‘재단법인’이라는 근대식 제도에 편입되었던 불교계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근대’의 제도적인 변혁 속에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교무원의 설립과 자산 구조

### 1. 재단법인 교무원의 설립 배경

일제시기 재단법인은 民法에 규정된 법인 설립 조건과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직접적인 규정으로 등장한 것은 1912년 3월 30일에 총독부령 제71호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sup>9)</sup>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법인의 설립은 이 규정의 제1조에서 “민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여 ‘허가법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민법 제34조의 ‘허가법인’과 더불어, 민법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으로서 민법 제34조

9) 《조선총독부관보》 부령 제71호, 1912. 3. 30

의 목적을 가진 것은 민법시행법 제19조에 의해 민법시행의 날부터 당연히 법인으로 되는[當然設立] ‘인가법인’이 모두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총독부령 제7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가법인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 시행여부는 전적으로 총독부의 자의에 달려 있었다.<sup>10)</sup> 따라서 1912년 법률의 공포와 함께 교회재산을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려 했던 천주교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도 인가법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다.<sup>11)</sup> 총독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외국교회와 같은 것은 현재 선교사수가 5백에 이르고 그 주의를 신봉하는 학교도 6백에 달해 官立학교를 능가하려는勢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재하는 것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지만, 또 인가되어 완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휴·활동함에 이르면 그 세력은 어떤 방면에서도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므로 법률가 이외의人士도 또한 깊이 조사연구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sup>12)</sup>

이미 실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시행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이

- 10) 안 유립,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1920년대 선교회·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pp. 126-130
- 11) 윤 선자, 「일제하 종교단체의 경제적 기반 확보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2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p. 68
- 12) 工藤忠輔, 「朝鮮に於ける公益法人に就いて」, 《朝鮮及滿洲》 83, 1914, p. 30(안 유립, 앞의 논문, 2009, p. 133에서 재인용)

당연히 인가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식민 통치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까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독부에서도 민법 규정에 의한 허가법인만을 법률에 명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는 1910년대에 꾸준히 재단법인을 신청하였고, 3·1운동 이후에 다소 완화된 정책 하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회유하기 위한 총독부의 의도가 복합작용한 결과, 1920년부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의 허가(인가)가 이루어졌다.<sup>13)</sup>

불교계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당시의 불교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불교계에는 3·1운동 직후 각 분야에서 일어난 자주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불교청년회와 그 별동대인 조선불교유신회<sup>14)</sup>를 중심으로 교단의 혁신과 사찰령의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청년회는 1921년 1월에 개최된 30본산住持總會에서 8개 항의 維新案을 30본산연합사무소측에 제출하였고,<sup>15)</sup> 같은 해 12월에 창립된 유신회는 4대 綱領을 정하여 교단 건설

- 13) 종교단체의 재단법인은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1931년까지 29개가 설립되었다고 한다(윤 선자, 앞의 논문, 2003, p. 81). 천주교측이 가장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계속된 선교사 귀환의 재단법인 설립 요구와 3·1운동 당시 개신교회에 비해 운동 참여율이 저조하였다고 인식한 총독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한다(p. 73).
- 14) 불교청년회는 전면에 나서서 실천적인 행동을 할 행동대원의 필요성에 의해 불교유신회를 조직하였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조계종사 근현대편』, 조계종 출판사, 2001, p. 87).
- 15) 청년회는 주지총회가 열리기 전인 1920년 12월에 불교유신에비회와 유신협의회를 개최하고 8개 항의 유신안을 결정하였다. 8개 항은, ①조선 불교는 萬事를 公論으로 결정할 것 ②30본산연합사무소 制規를 수정할 것 ③조선 사찰의 재정을 통일할 것 ④조선 불교의 교육주의 제도를 혁신할 것 ⑤포교 방법을 개선할 것 ⑥종래의 儀式을 개선할 것 ⑦京城 佛敎院을 건설할 것 ⑧인쇄국을 설치할 것 등이다(「주지의 반성을 促하

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6)</sup>

이들 유신안과 4대 강령의 항목 중에서 ‘조선 사찰의 재정을 통일할 것’, ‘통일 기관의 건설’, ‘사유재산의 정리’는 당시까지 중앙 기관의 성격을 유지해 오던 30본산연합사무소가 불교계 전체를 통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1920년부터 설립된 종교단체의 재단법인화 흐름 속에서 불교계도 통일 기관의 설립과 교界 사업을 위한 자산의 확보에 중점을 두려고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교계의 재단법인 설립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재단법인 교무원이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총독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것은 표면적으로 자주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불교계는 1920년대 초반 전 사찰을 통괄하는 강력한 중앙 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란을 거듭하였다. 이때 자주적이고 개혁 성향을 지닌 승려들을 중심으로 총무원이 성립되었고, 이들이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독자적으로 통일기관을 세우려고 하자 주지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는 30본산 주지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게 하고, 30본산연합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총무원도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기관을 세워서 불교사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sup>17)</sup>

는 朝鮮佛教革新會, 《매일신보》 1920. 12. 21).

16) 「千餘의 佛教青年이 ‘유신회’를 조직코자 운동 중 명춘주지총회에 개혁안을 제출, 《동아일보》 1921. 12. 15. 4대 강령은 ①조선 불교의 현행제도 타파 ②통일 기관 건설 ③사유재산 정리 ④포교·교육기관의 확장이다.

17) 「佛敎紛爭解決乎」, 《동아일보》 1922. 5. 25

이때 열린 주지총회에서 중앙 기관으로 교무원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문제를 토의한 결과,<sup>18)</sup> 1922년 12월에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621,799원 51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sup>19)</sup> 이후 교무원은 1924년에 서로 대립 중이었던 총무원과 통합<sup>20)</sup>되면서 재단법인 체제하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총무원은 통합되기 전인 1923년 6월에 天道敎로부터 보성고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1924년 1월 15일에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여기에서 재단법인도 아니었던 총무원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선, 당시 총독부의 학교 설립 방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이 있는 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sup>21)</sup>라는 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학교를 경영하는 데에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비록 총무원이 보성고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청년 승려들과 몇 개의 본산<sup>23)</sup>만을 중심으로 한 총무원이 과연 보성고보를 경

18) 「육십만원의 기본으로」, 《동아일보》 1922. 5. 30

19) 「寄附行爲年賦金融規定」, 《불교》 3, 1924. 9, p. 17. 그러나 실제로 수납된 출자금은 156,384원 80전이였다. 당시 본산별 기부금 현황은 한동민의 앞의 논문(2005, pp. 192~193)을 참조.

20) 「통일적 중앙기관」, 《동아일보》 1924. 4. 3

21) 「개정사립학교규칙」, 《조선총독부관보》 부령 제24호, 1915. 3. 24

22) 당시 신문상에서도 고등 정도의 학교 설립에는 설립 및 유지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므로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에 한하여 총독부가 허가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私立 高普認可方針」, 《동아일보》 1922. 1. 25).

23) 통도사, 범어사, 석왕사. 교무원이 1922년에 재단법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이들 세 본산은 빠져 있었다.

영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1924년 1월에 보성고보를 인수한 총무원은 조선총독부의 방침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방도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결국 불교계의 통일 문제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무원과 교무원이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sup>24)</sup> 한용운이 훗날 “처음에 육십만원 재단법인이 된 동기로 말하면 천도교로부터 보성고보를 인계하고 그것을 경영하기 위하여 육십만원재단법인을 성립하였다”<sup>25)</sup>고 회고한 것을 보면, 당시 학교의 경영과 재단법인의 설립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교무원의 자산 구조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定款의 작성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산의 출연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무원이 재단법인으로서 학교 경영뿐 아니라 제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본산으로부터 기본 자산을 확보해야만 했다. 즉, 재단법인으로서 튼튼한 재정구조를 갖추

24) 교무원과 총무원이 정확히 무슨 이유로 타협하여 통합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다. 김순석은 총무원이 총독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과 천도교측으로부터 인수한 보성고보의 운영난 등으로 중첩된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김 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p. 129). 한동민은 당시 조선 불교계의 실세였던 경남3본산이 교무원 세력에 불참한 것과 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실제로 156,384원밖에 불입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서 교무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중용으로 서로 타협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았다(한 동민, 앞의 논문, 2005, p. 184). 결국 총독부의 간섭이 있었지만, 총무원이나 교무원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5) 한 용운, 「불교사업의 기정방침을 실행하라」, 《불교》 103, 1933. 1, p. 6

필요가 있었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1종재산과 2종재산으로 나뉜다. 1종재산은 각 본산으로부터 기부행위로 들어온 재산으로서 토지 등을 직접 양도하거나, 매각하고 기부한 현금을 말한다. 기부의 형태는 평의원총회에서 7가지로 정하여 각 본산에 배포하였는데, ①蓄積金 ②低利借入金 ③寺刹廢止 賣却 ④山林伐採 및 間伐 ⑤土地賣却 ⑥土地提供 ⑦年賦拂込 등의 방법이 있었다.<sup>26)</sup> 2종재산은 기본적으로 1종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 8%의 이자금을 말하는데, 초기인 1923년부터 교무원이 1종재산을 전부 受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서 그에 상응하는 2종재산, 즉 이자금을 4기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였다.<sup>27)</sup> 2종재산은 은행조례에 의하여 8리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1924년 제2회 평의원총회에서 당시 금융공황으로 인한 보통 이율의 증가를 이유로 이율을 1할로 인상하였다.<sup>28)</sup>

재단법인의 재산 중, 교무원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바로 2종재산을 말하는데, 아래 <표1>의 ①기본재산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60만원의 재단이었으므로 8%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8,000원이 수납되어야 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표치를 달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교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못한 수납은 결국 나중

26)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회 평의원총회회록」(1923),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27) 4기는 4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이며, 금액은 한성은행 당좌예금구좌로 부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회 평의원총회회록」(1923),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 22).

28) 「제2회 평의원총회회록」(1924),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 47

에 교무원이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1〉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연도별 수입 현황<sup>29)</sup>

연도	총수입	①기본재산 수입	②사용료/수업료	③전년도 繰越金	④과년도 수입금	⑤잡수입	⑥일시 차입금
1923	16,850 <sup>(04)</sup>	10,425 <sup>(04)</sup>	6,193				
1924	33,309 <sup>(12)</sup>	33,309 <sup>(12)</sup>					
1925							
1926	74,062 <sup>(05)</sup>	33,452 <sup>(41)</sup>	20,573 <sup>(99)</sup>	6,226 <sup>(01)</sup>	8,775 <sup>(94)</sup>	5,033 <sup>(70)</sup>	
1927	65,229 <sup>(98)</sup>	43,044 <sup>(69)</sup>	20,385	1,720 <sup>(94)</sup>		79 <sup>(33)</sup>	
1928	71,022 <sup>(11)</sup>	34,299 <sup>(22)</sup>	23,656	1,747	1,600	9,719 <sup>(89)</sup>	
1929	79,198 <sup>(37)</sup>	25,553 <sup>(21)</sup>	26,455 <sup>(91)</sup>	1,627 <sup>(36)</sup>	130	4,831 <sup>(89)</sup>	20,600
1930	103,628 <sup>(60)</sup>	22,533 <sup>(27)</sup>	26,196 <sup>(41)</sup>	94 <sup>(18)</sup>	7,689 <sup>(09)</sup>	5,415 <sup>(65)</sup>	41,700
1931	83,478 <sup>(68)</sup>	17,275 <sup>(18)</sup>	24,577 <sup>(31)</sup>	395 <sup>(30)</sup>	11,474 <sup>(50)</sup>	2,556 <sup>(37)</sup>	27,200
1932	53,614 <sup>(40)</sup>	22,729 <sup>(33)</sup>		1,201 <sup>(37)</sup>	8,909 <sup>(59)</sup>	4 <sup>(11)</sup>	20,770
1933	43,455 <sup>(19)</sup>	26,099 <sup>(21)</sup>		369 <sup>(69)</sup>	5,387 <sup>(38)</sup>	2,198 <sup>(91)</sup>	9,400
1934	32,520 <sup>(59)</sup>	26,204 <sup>(84)</sup>		300 <sup>(17)</sup>		6,015 <sup>(58)</sup>	
1935	39,940 <sup>(27)</sup>	24,336 <sup>(71)</sup>		607 <sup>(38)</sup>	1,199 <sup>(67)</sup>	1,867 <sup>(82)</sup>	11,928 <sup>(89)</sup>
1936	31,765 <sup>(07)</sup>	24,795 <sup>(59)</sup>		5,534	100 <sup>(68)</sup>	62 <sup>(62)</sup>	1,272

\* 단위: '圓', ()안의 숫자는 '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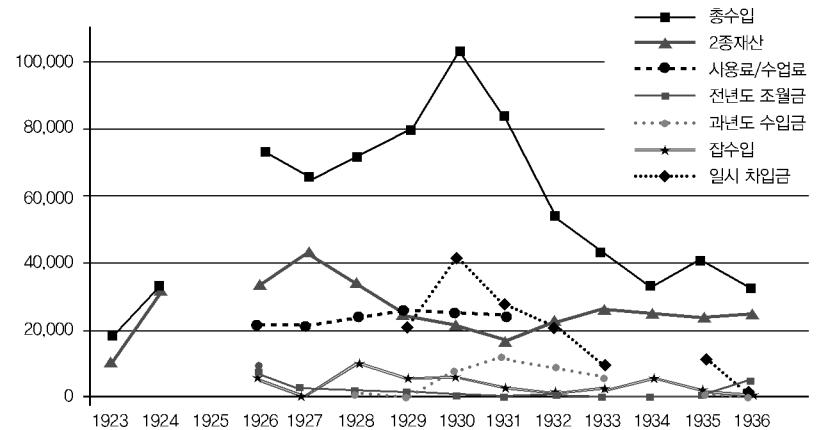
1종재산과 2종재산은 재단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무원의 1년 예산에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입원이 있었다. ②사용료/수업료는 건물을 빌려 주고 얻은 수입과 보성고보 및 불전으로부터 거두는 수업료를 말한다.<sup>30)</sup> ③전년도 繰越金은 전 해에 사용하고 남은 돈의 이월금을 말하

29) 평의원총회회의록에서 매년도 결산 부분을 정리한 것임(《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참고). 표에서 공란으로 처리한 것은 결산표에 기입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1925년도의 경우는 회의록의 유실로 참고하지 못한 것이다.

30) 건물의 임대료는 인쇄소와 명성여자실업고등학교 등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1928년과 1929년 두 번뿐이고, 금액도 1,000원 미만이었다. 그 외의 연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무상대여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아원에 대한 예산도 1930년에 1,598원, 1931년에 290원으로 두 번만 집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의 설명은 대부분 보성고보와 불전의 수업료

며, ④과년도 수입금은 전 해에 수납하지 못한 2종재산과 잡지대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⑤잡수입은 기타 예금수입을 말하는데, 잡지 『佛敎』의 代金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9년부터 보이는 ⑥일시 차입금은 예산안만큼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자 부족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던 돈으로, 교무원이 負債를 남기고 적자재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표1〉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이들 수입원의 비율에 대한 윤곽이 분명해진다.

〈그림1〉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연도별 수입 현황 그래프



우선, 일시차입금을 제외하고 평균 2만원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항목은 2종재산과 사용료/수업료이다. 다시 말해, 이 두 항

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목의 수입이 교무원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볼 때 2종재산은 192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교무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2종재산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1923년 63%, 1926년 45%, 1927년 65%, 1928년 48%, 1929년 32%, 1930년 22%, 1931년 20%, 1932년 42%, 1933년 60%, 1934년 80%, 1935년 60%, 1936년 78%로 일정하지 않았고, 비율에서도 1927년 이후로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교무원의 재정 구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대변해준다.

반면, 사용료/수업료는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종재산 수입이 급격히 하락할 때 증가세를 보이며 1929년과 1930년에는 2종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도 하였다.<sup>31)</sup> 그러나 1932년부터는 보성고보와 불전의 수업료가 교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측의 獨自 경영으로 인해 수업료가 교무원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2)</sup> 따라서 1932년부터 교무원의 총수입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것으로 재단법인 교무원의 사업집행을 위한 기본 자산이 2종재산의 수입과 두 학교에서 들어오는 수업료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년도조월금과 과년도수입금은 결국 앞의 두 항목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다음해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사업집행을 위한 기본 자산인 2종 재산은 매년 목표 금액을 수납하지 못했으며 수납액도 불규칙적이었다. 따라서 교무원의 재정 상황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부족한 금액을 차입해 와야 하는 적자 운영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III. 재정 운영과 학교 경영

앞 장에서 교무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어떻게 자산을 확보하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교무원의 지출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얼마나 투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연도별로 전체 세입과 세출을 정리한 표를 보고 전반적인 재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2〉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연도	세입		세출		교육비	비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922			28,230	27,042(37)	13,359(07)	49.4
1923	42,247	16,850(04)	42,247	32,726(59)	20,893(24)	63.8
1924	60,000	33,309(12)	40,990(30)	47,154(30)	29,010	61.5
1925	74,690(88)		74,690(88)			
1926	131,757(91)	74,061(05)	131,757(91)	72,340(11)	40,573(99)	56.1
1927	68,845(94)	65,229(96)	68,845(94)	61,650(13)	45,905(17)	74.5
1928	80,181(80)	71,022(11)	80,181(16)	69,394(75)	54,500	78.5
1929	80,331	79,198(37)	80,331	79,104(19)	57,420	72.6
1930	94,206	103,628(60)	94,206	103,233(30)	62,735(04)	60.8
1931	88,473(70)	83,478(66)	88,473(70)	82,277(29)	56,032	68.1
1932	81,787(93)	53,614(40)	81,787(93)	53,244(71)	30,000	56.3
1933	96,724	43,455(19)	96,724	43,155(02)	30,400	70.4
1934	50,381	32,520(59)	50,381	31,913(21)	23,560	73.8
1935	51,893	39,940(27)	51,893	39,940(17)	29,750	74.5
1936	44,875	31,765(07)	44,875	31,765(07)	19,182(87)	60.4

\* 단위: '圓', ( )안의 숫자는 '錢'

\* 비율은 세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31) 1928년부터 수업료가 증가한 것은 불전이 1928년에 개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제10회 평의원총회회록」(1932),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 21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 부분을 보면 1924년까지는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 적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무원과 총무원이 통합되기 이전이어서 그만큼 총무원에 합류한 몇몇 본산이 있었기에 수입이 적었을 것이고, 게다가 교무원이 東光學校<sup>33)</sup>를 운영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의 연도는 일단 수입 금액에 맞추어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 장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29년부터는 일시차입금으로 인해 수입과 지출이 보조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교무원은 기본재산수입원인 2종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 교무원은 전반적으로 적자재정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26년도에 세입과 세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교무원의 예산에 보성고보의 수업료가 편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sup>34)</sup> 그리고 1930년도에 유달리 많은 결산액이 집행된 것은 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이 41,700원으로 다른 연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학교의 경영과 2종재산의 미수납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절정에 달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입금이 늘어났을 것이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 유독 많은 금액을 차입하였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교무원의 사업은 포교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33) 동광학교는 1921년에 30본산연합사무소가 설립한 중등학교 수준의 학교로, 교무원과 총무원이 통합되면서 보성고보에 통합되었다.

34) 1926년도 예산이 131,757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유달리 큰 이유는 보성고보의 수업료 편성 외에, 전년도 조월금이 11,797원, 과년도 수입금이 54,304원으로 높게 책정된 데 있다. 즉 전년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2종재산 등을 한꺼번에 수납할 것을 기대하고 높게 책정한 듯하다. 그 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 포교사업에는 기관지인 『불교』의 간행과 聖典의 간행, 강연회 등이 포함된다. 評議員總會의 회의록에는 포교비 항목과 그와 별도로 『불교』지의 간행비 항목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포교비는 전체 세출의 3%정도를 차지하였고,<sup>35)</sup> 잡지 『불교』의 간행비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당시인 1928년에서 1930년을 보면 5%를 상회하였다.<sup>36)</sup> 현재 회의록에서는 『불교』지 외에 다른 경전이나 佛書가 언제 얼마나 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강연회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별도의 연구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은 <표2>에서 교육비에 들어간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예산의 1/2~2/3이상을 꾸준히 차지하였다. 즉, 보성고보와 불전을 경영하는 일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정관 제1조에서 불교계 발전을 위해 교육에 힘쓸 것을 강조한 취지와도 부합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성고보는 1924년부터 교무원이 경영해 왔고, 불전은 1928년에 개교하였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의 학교 경영은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교무원 사업의 기본수입원인 2종재산이 원활하게 수납되지 못한 관

35) 회의록에 명시된 금액만 놓고 보면, 교육비 다음에 많은 항목은 급여비이다. 매년 총 수입이 불규칙적이라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급여비는 전체 지출에서 5%~10% 이대를 차지하였다. 전체 지출에서 포교비로 책정된 금액은 1926년 2.4%, 1927년 2.9%, 1928년 3.5%, 1929년 3.5%, 1930년 2%, 1931년 2.4%, 1932년 3.1%, 1933년 2.5%, 1934년 3.1% 였다.

36) 잡지의 간행비는 1928년 5.23%, 1929년 6.59%, 1930년 5.09%, 1931년 2.14%를 차지하였다. 잡지의 발행 부수는 매년 달랐지만, 대체로 매달 1,200부에서 1,500부를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잡지의 발행 사정에 대해서는 김 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불교』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pp. 68-77을 참고).

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전문학교의 승격문제는 1929년 평의원총회에서 거론되었는데, 이를 위해 60만원재단에서 40만원 증자안이 채택되었다.<sup>37)</sup> 더욱이 같은 해 개최한 朝鮮佛敎禪敎兩宗 僧侶大會에서 불교계 통일기관으로서 宗會가 세워져,<sup>38)</sup> 재단법인 교무원과는 별도로 전국 승려들로부터 義務金을 거두어들였다. 교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 초기부터 2종재산의 미수납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승려들이 내야 할 이와 같은 의무금의 발생은 교무원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특히 40만원 증자와 관련해서 각 본산이 보인 부정적인 태도는 교무원의 학교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1933년도에 40만원 증자건에 대해 찬성한 본산은 13개 사찰<sup>39)</sup>에 불과하였고, 그 외 사찰들은 주로 “經濟力不及”을 이유로 반대 내지는 유보하고 있다.<sup>40)</sup> 어쨌든 교무원은 원활하지 못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2년에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30,000원으로 축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보성고보에 대한 지원은 1만원 초반대로 급감시켰다. 1933년의 평의원총회에서는 보성고보에 대한 지원금을 1

만원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재단 整理委員會를 조직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41)</sup> 결국 1934년에 교무원의 평의원총회에서 보성고보의 경영권 인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8본산은 보성고보의 지속 경영에 대한 성명서 및 책임서를 공표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12만원을 보충할 것을 결의하며 끝까지 경영의지를 놓지 않았다.<sup>42)</sup> 교무원은 1935년 평의원총회에서 9월 10일까지 12만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보성고보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본산에 增資에 대한 기부 申込書를 요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sup>43)</sup>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9월 13일에 보성고보를 高啓學院에 인계하였다. 정리하자면, 보성고보의 경영에 대한 의지와 시도는 분명 있었지만, 각 본산의 비협조와 교무원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보성고보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4)</sup>

<표2>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의 두 그림은 교무원의 수입과 지출의 연도별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37) 「제7회 평의원총회회록」(1929),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p. 10-11

38) 김 광식,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39) 송광사, 선암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은혜사, 고운사, 김룡사, 성불사, 석왕사, 봉은사, 대흥사

40) 「제11회 평의원총회회록」(1933),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 20. 당시 전국 각 사찰에서는 주지들의 전횡으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1926년의 전국 사찰 부채액은 60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가 사찰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초반의 부채액이 무려 100만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김 광식, 「백용성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pp. 16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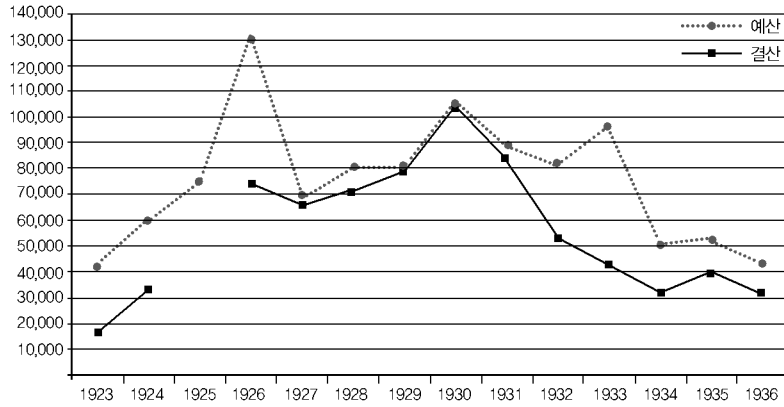
41) 「제11회 평의원총회회록」(1933),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42) 「普成高普經營 增資繼續기로 決議」, 《조선일보》 1934. 11. 5. 8개 본산은 백양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은혜사, 대흥사, 법주사, 건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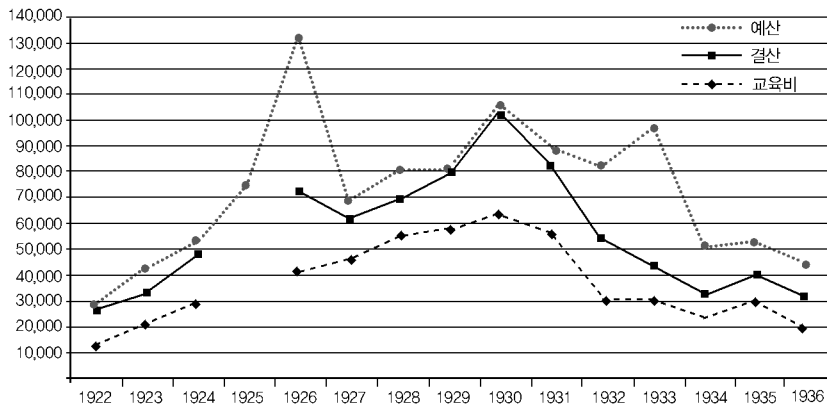
43) 「제13회 평의원총회회록」(1935),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 pp. 17-18 참고.

44) 보성고보 경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 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2000, pp. 266-286을 참고.

〈그림2〉재단법인 중앙교무원 연도별 세입 현황표



〈그림3〉재단법인 중앙교무원 연도별 세출 현황표



그래프를 보면, 두 그림 모두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예산과 결산의 그래프 간격이 넓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시차입금을 빌려오는 상황에서도 교무원이 예상했던 예산만큼 실제 수입과 지출이 따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실제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앞에서 살펴 본 40만원 증자안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며, 나아가 교무원의 재정 운영 능력이 그만큼 미숙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교무원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쌓여가는 부채의 영향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그래프의 간격이 넓어지기 직전인 1931년에도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宗會에서 총독부 종교과장은,

중앙교무원으로 말하면 본래 60만원 재단으로 그동안 諸位의 誠力으로 형식만으로는 완성이나 현금 일시차용금 기타로 인하여 내용으로는 전 부 出資라고 하기 難하며 또 근년에 2종금 체납이 6만원여원이나 되어 차입이 근 6만원이나 되니 출자상태는 이러한 경우에 있습니다. 4대 기초(재정적 단결, 인적 단결, 인물 양성 기관 설치, 포교망의 완성) 가운데 이 중앙교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 만사를 除하고도 이 재단을 위하여 進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sup>45)</sup>

45) 「조선불교선교양종 제3회 총회회록」,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7, 민족사, 1996, p. 23

라고 말하고 있다. 2종재산의 채납이 6만여 원이나 되어 그만큼 차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佛敎社 기자가 교무원의 채무부 상무이사 黃耕雲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황경운은 채무가 없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7만여 원의 채무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2종(이자)의 未收가 있어서 채무가 있으나 2종을 받으면 채무를 감고도 여유가 있는 즉 실로 채권 채무를 相殺하면 채무가 없는 셈”<sup>46)</sup>이라고 하여 2종재산에 대한 수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채무부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완곡하게 말했을 뿐이지, 당시 2종재산의 수납은 이후로도 나아지지 못하였고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교무원의 재정상황은 기본자산인 2종재산을 전부 수납하지 않는 한, 해를 거듭할수록 채무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알 수 있다.

#### IV. 교무원 체제의 의미와 한계

1920년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기존 불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재단법인’이라는 근대식 제도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여 교계의 주된 사업을 전개하였다. 사찰령 반포 이후 1910년대까지는 삼십본산주지회의와 삼십본산연락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각 본산에 할당된 일정 분배액을 모금함으로써 주요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그 규모와 내

용은 1920년대 재단법인 체제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47)</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60만원 재단의 교무원은 보성고보와 불전의 운영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월간 『불교』의 간행 및 강연 활동을 통하여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불교계가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교무원이 재단법인화 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1920년대 들어 종교단체들이 교단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에 적극 찬성<sup>48)</sup>하며 총독부로부터 인가받으려 했던 일을 돌이켜 보면, 이 당시 종교단체의 주요 사업구조가 재단법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불교계는 대중 교화를 위해 포교사업을 해야 했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포교사가 양성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이 자연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단법인에 한하여 학교의 설립을 허가한다는 총독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은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무원도 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을 인가받음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모든 활동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주체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보성고보와 불전을 경영하며 근대화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20년대 교무원의 재단법인 설립과 활동은 근대 불교

46) 第二記者, 「불교교무원재단법인의 내용」, 《불교》 88, 1931, 10

47) 예를 들어 1914년의 각 본말사 분배액을 보면, 30본말사의 분배액 합계가 465원 10전에 불과하였다(한 동민, 앞의 논문, 2005, p. 158).

48) 김순석, 앞의 책, 2003, p. 130

계의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현실과 각 사찰 및 승려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협조 속에 일정한 한계를 보여 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무원 체제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교무원이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총독부의 감시·감독 하에 들어갔다는 통제 의미 내포한다. 즉 재산목록과 사업 현황, 지출과 수입 등을 반드시 총독부에 보고해야만 했고, 각종 기부행위와 재단 형태의 변경 사항은 보고와 인·허가를 거쳐야만 했다.<sup>49)</sup> 총독부의 종교과 주임이 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재단법인의 이러한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단사업의 경영은 이전의 삼십본산연합시대의 사업경영방법과는 취지가 相異한 者임으로 무릇 民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을 위할 者이며 또 법인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끊이지 안케 감독관청의 엄정한 주의감독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임으로 재단업무의 집행은 결코 曲事 非行을 許치 안할 것이다.<sup>50)</sup>

이처럼 당시 재단법인의 허가 자체가 총독부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교무원과 천주교회의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비교했을 때, 교무원이 자주적으로 법인화를 이끌어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49) 안 유림, 앞의 논문, 2009, p. 156

50) 岡本義一, 「조선불교의 중흥과 교무원의 직능」, 《불교》 3, 1924, 9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던 천주교회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교회 재산은 미등기 상태이거나 선교사나 신자들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그 소유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아래 각종 재산과 자본의 수탈이 자행되는 현실 속에서 불안정한 교회 재산은 총독부의 수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sup>51)</sup> 따라서 천주교회는 종교법인의 달성을 통해 교회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재정 구조 속에서 선교 활동과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로 인해 1910년대부터 꾸준히 재단법인의 인가를 요구해왔고, 결국 1920년에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시작으로 여러 교구에서 각기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불교계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초반 혼란을 거듭하다가 총독부의 중재와 지시로 교무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내부적으로 혁신적이었던 총무원 세력이 독자적으로 재단을 만들려는 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무원에 통합되었던 것이다.

크게 보면 천주교나 불교의 재단법인은 총독부가 종교단체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설립 과정을 보면, 현실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총무원의 혁신 노력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교계가 무조건 총독부의 통치 방식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찰령’이라는 체제 하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후 총독부의 지침을 계속해

51) 윤 선자, 「일제하 조선천주교회의 법인화 과정」, 《복약사론》 4, 복약사학회, 1997, p. 245

서 수용하게 되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心田開發運動에 동조하는 등<sup>52)</sup>의 친일 행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셋째, 교무원은 재단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확보하고 교육사업을 진행해 나갔지만,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앞 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교무원은 사업 진행을 위한 2종 재산을 제대로 확보한 적이 거의 없었다. 교무원의 이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본산으로 출장을 가서 직접 수금해오는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애썼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용운은 교무원의 채무가 증가하면 재단법인의 근본 자체가 동요될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sup>53)</sup>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 본말사 승려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재단법인이라는 근대 제도를 수용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뜻하며, 교무원을 이끌었던 간부진들의 경험 부족과 경영 미숙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보성고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난에 봉착한 외적인 어려움 외에도 교무원이 난관에 부딪혀야 했던 내적인 어려움도 존재했다. 보성고보는 천도교에서 설립한 학교로 처음에 총무원이 인수하였다가, 교무원과 통합되면서 재단법인 교무원이 운영한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 방침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교

직원과 학생들은 불교인이 아니었으므로 불교 교육을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학교의 재단이 불교계라는 사실조차 알리기를 꺼려했다고 한다.<sup>54)</sup> 이러한 교단 분위기가 달라져서 보성고보가 불교재단에서 경영한다는 외형상의 지표를 확립하게 된 것은 1931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sup>55)</sup> 불교계는 1929년에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宗會를 성립시키고 宗憲을 세워 교단을 정비하였는데, 종헌에 따라 교단의 제반 법규를 제정하는 법규위원회가 교육법안을 만들고 종립학교 관리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무원은 점차 보성고보 내의 비불교인을 정리해 나갔고, 1931년에 교원 44명 중 승려가 13명, 불교인이 27명, 천도교인이 1명, 무종교인이 3명으로 바뀔 수 있었다.<sup>56)</sup> 이를 통해 볼 때, 처음 총무원이 보성고보를 인수한 1924년부터 적어도 1930년까지는 보성고보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보성고보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불교계 자원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였던 점<sup>57)</sup>은 보성고보에 대한 교육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주적으로 세워진 불교계 최초의 통일기관이라고 평가받는 종회와 모호한 관계가 유지된 점이다. 즉 재단법인 교무원이 종회의 집행기관이었던 조선불교선교양종 중앙교무원<sup>58)</sup> 산하에 예속

52) 김 순석, 「근대 불교 종단의 성립 과정」, 『불교 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 출판사, 2006, p. 76

53) 한 용운, 「불교사업의 기정방침을 실행하라」, 《불교》 103, 1933. 1, p. 6  
“수년래로 1종 혹은 2종의 출자에 체납이 만하여서 既設事業에 결합이 생할 뿐 아니라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교무원의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재단법인의 근본이 동요될 경향이 있은즉 엇지 우려할 바 아니리오.”

54) 「교무원의 대영단 —종립학교의 정리단행을 뜻고—」, 《불교》 81, 1931. 3, p. 4

55) 김 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앞의 책, 2000, pp. 266—271 참고.

56) 「제10회 평의원총회회록」(1932), 《한국근현불교자료전집》 66, p. 27

57) 「제10회 평의원총회회록」(1932)에서 서무부의 전년도 보고 현황을 보면, 보성고보의 학생분포가 승려 11명, 불교인 57명, 기독교인 23명, 유교인 35명, 천도교인 5명, 무교인이 508명으로 되어 있다.

58) 이 교무원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는 다른 기관이다. 승려대회를 통해 세워진 종회가 한마디로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집행기관으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되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sup>59)</sup> 이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고 각각 회의를 진행하여 1년 예산을 심의했으며, 심지어 재단법인 교무원에서 종회의 예산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이 둘의 관계에 대해 趙鐵雲은 재단법인 교무원이 종현에 의해 운용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sup>60)</sup> 김법린은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主從顛倒로 표현하였다.

양종교무원과 재단교무원과의 현존관계로 말하면 형식상 실질상 아울러 양자의 主從本末의 관계가 顛倒되어야 있다. 첫째, 형식에 있어서 통제 본영인 양종교무원의 부장선거가 그 종속적 사업기관인 재단교무원의 이사선거에 제한되지 않는가. 양종교무원의 부장으로서 재단교무원의 이사로 피선됨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이사로써 양종교무원의 부장으로 피선되는 것이 부장선거에 있어서 최고 公議機關인 宗會가 재단평의기관인 評議會의 의사에 제한되는 것 따라서 기타중앙사업의 운영방침과 其 예결산등 중요한 의결에 전자가 후자에게 제약 추수되는 현존형식은 법리상 너무나 지차친 주종전도다.<sup>61)</sup>

당시 교계 상황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결국 전체 불교계의 모순과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불교계에 비록 종회나 재단법인 교무원과 같은 중앙 기관이 존재했었지만, 그들이 전국 사찰의 公議를 이끌어내고 중요 사업을 집행하는 데 강력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용운은 다음과 같이 승려의 자각 부족에 의한 종회의 유명무실한 기능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통일기관을 의미한 종회 교무원이 있으나 다만 名義뿐이요 통일의 실적을 수확지 못하여 불교의 통일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되나니 그 원인을 一言으로 蔽하면 승려의 自覺 부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승려의 자각이 충실하다 할지라도 기관조직의 내용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지 못하면 통일의 목적을 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sup>62)</sup>

그러나 재단법인 교무원과 종회는 형식상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1920년대 교무원의 활동은 종회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종회도 각 사찰과 승려들의 무관심 속에 시들어 버렸지만, 교무원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출범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교무원과 종회는 똑같이 각황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매년 평의원총회와 종회회의도 연달아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종회와 교무원은 실질적인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

조선불교선교양종 중앙교무원이었다.

59) 김 광식, 「1930년대 불교계의 종현 실행문제」,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pp. 390-391

60) 「불교중앙행정제에 대한 불만과 희망」, 《불교》 93, 1932. 3, p. 17

“현 재단법인 교무원을 종현에 의한 교무원으로 완전히 운용하도록 교무원 간부와 중앙회 의원은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

61) 김 법린, 「제5회종회앞에노인 통제교정의 확립문제」, 《불교》 105, 1933. 3

62) 한 용운, 「조선불교의 개혁안」, 《불교》 88, 1931. 10, p. 4



지하면서 공존했을 것이다. 이것은 교무원의 제9회 평의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定款을 개정하려고 하였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 제8조 중 「이사 중 3인은 선교양종중앙교무원 부장으로 총당케 할 것」
- 제15조 중 「감사는 선교양종총회심사위원으로 총당케 할 것」
- 제16조 중 「평의원은 선교양종총회원으로 총당케 할 것」<sup>63)</sup>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무원과 총회는 대립이 아닌 공존 관계에 있었고, 간부진이 서로 동일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무원 체제의 경험은 그대로 총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재단법인 교무원이 1920년대 불교계의 중앙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최초의 통일기구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총헌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 불교계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재단법인 교무원의 초창기에 이미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장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무원과 같은 중앙 기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全鮮 각 본산을 통할하는 宗制上的 최고 기관인 줄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교무원 당국자 기타 일부 사람 사이에도 이 오해에 부지불식간 陷入한 것 같은 언동이 있는지 此事에 관하여도 교무원의 職能을 명백히 의식하여 자타가 相戒하여 오해의 弊에 陷치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63) 「제9회 평의원총회회록」(1931),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66, 1996

이다.

교무원은 全鮮의 각 본말사 공동 기부출자금으로써 설립된 조선불교의 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이고, 결코 조선사찰의 宗規宗制上的 통할 기관은 아니로다.

교무원의 직능은 교무원 기부행위에 규정한 「宗教並教育의 事業을 할 일」及 更히 一步를 進하여 「朝鮮 各 寺刹의 聯絡을 圖함」의 범위 내의 사업 기관이로다.<sup>64)</sup>

따라서 재단법인 교무원은 단지 불교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1 본산의 연락기관에 불과하였다는 지적<sup>65)</sup>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1922년에 설립되어 불교계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였던 재단법인 교무원의 자산구조와 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무원의 운영 시스템이 이전에 존재했던 불교계 기관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재단법인이라는 법제상의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처음으로 전국 각 本山으로부터 기본 자산을 거두어 들여 주요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변화였다. 더욱이 제도적으로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신식학교를

64) 岡本義一, 「朝鮮佛敎의 中興과 敎務院의 職能」, 《불교》 3, 1924, 9, pp. 14-15

65) 김 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4, p. 292

경영하여 불교 인재를 배출하였던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의식, 의례 및 교리(사상)와 같은 불교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근대화는 아니지만, 敎界 운영상의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교무원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시도되었던 제도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승려들의 무관심과 사업경영의 미숙함은 그대로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최대 중점 사업이었던 교육사업 중에서 보성고보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교무원의 기본 재산이었던 2종재산에 대한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불교전수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40만원을 증자하려고 했던 계획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새롭게 세워진 종회와 서로 교차되는 교계 운영상의 모순된 시스템은 불교계의 근본적인 통일을 기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교무원은 운영적 측면에서 근대화를 추구하였지만, 처음부터 재단의 기본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들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불교계의 근대화 운동은 ‘재단법인’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응집력을 가지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재단법인 교무원의 자산 구조와 그 운영 시스템은 불교계가 종단을 건설하려는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무원이 매년 개최한 평의원총회는 전 본산의 대표 승려들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곧 교무원의 사업 집행이 전불교도의 公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비록 교무원이 사업 경영을 위한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불교도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교무원의 노력과 경험이 있었기에 종회와 종헌이 세워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총본산인 조선불교 조계종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朝鮮總督府官報》
- 《東亞日報》
- 《每日申報》
- 《朝鮮日報》
- 《佛敎》
- 「財團法人 朝鮮佛敎中央敎務院 評議員總會會錄」
- 「朝鮮佛敎禪敎兩宗 宗會會錄」
- (《佛敎》와 회의록은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민족사, 1996에서 참고)

### —논문 및 저서

- 工藤忠輔, 「朝鮮に於ける公益法人に就いて」, 《朝鮮及滿洲》 83, 1914
- 김 광식, 「백용성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 「교단 개혁운동의 명암」,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 ———,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문제」,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 ———,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 ———,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4
- 김 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불교』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 김 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성립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 출판사, 2006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조계종사 근현대편』, 조계종 출판사, 2001
- 안 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1920년대 선교회·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 윤 선자, 「일제하 종교단체의 경제적 기반 확보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2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 「1910년대 일제의 종교규제법령과 조선천주교회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 ———, 「일제하 조선천주교회의 법인화 과정」, 《복약사론》 4, 복약사학회, 1997
- 한 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5

#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Limitation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Kim, Seong-yeon

Wongak Buddhist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elucidates how Korean Buddhism coped with constitutional changes in the modern period by analyzing the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established in 1922. In the early 1920s, Buddhist societ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reformist *Chongmuwon*(總務院) and conservative *Kyomuwon*(教務院). After experiencing a serious feud between those two groups, Buddhist society established a united founda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in 1924 and began to perform a centralized project. The basic property of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consisted of first class assets and second-class assets(land and money donated by head temples were

first class assets) and an interest income from the first class assets was the second-class assets. It was important to secure as much funds as possible since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used the interest income to execute its projects. However, it had to use a bank loan since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failed to raise enough money. Even in such economic difficulty,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constantly focused on school management. To develop and popularize Buddhism, it was necessary to have better Buddhist human resources. However, the capacity to train enough Buddhist human resources was limited since most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Boseong* Middle School(普成高等普通學校)(taken over from the Cheondo-gyo religion) were not Buddhist. In addition, raising the Buddhist School(佛教專修學校) to the status of a special school needed significant finances and the Foundation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is different from old Buddhist organizations. The fact that it accepted the legislative management system of a foundation and collected funds from head temples to execute its project shows that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led a meaningful change. The Joseon Buddhism Foundation has modernized the management of Buddhist society and has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Key Word

Joseon Buddhism Foundation, First-class assets,  
Second-class assets, *Kyomuwon*, the *Boseong* Middle School,  
the Buddhist School, *Jonghoe*

## 불교문화 삼원론

최복희(오인)  
중앙승가대학교

1. 들어가기
2. 불교문화란 무엇인가
  - 1) 문화란 무엇인가
  - 2) 문화상징론
  - 3) 불교문화란 무엇인가
3. 불교문화의 선행연구
  - 1) 불교문화 단행본
  - 2) 불교미술, 불교예술, 불교문화
4. 불교문화 분류법
  - 1) 선행분류법
  - 2) 신분류법—불교문화 삼원론
5. 나가기

✎ 투고일자 2010.11.10 | 심사일자 2010.11.28 | 게재확정일자 2010.12.8